주식 대여중개에 관한 약관 (대여자용)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카카오페이증권 대차중개 시스템(이하 “대차중개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해 대여신청을 한 대여자의 보유종목으로 대여풀을 구성한 후 차입자의 신청에 따라 대여중개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증권의 대여를 신청한 고객과 회사 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대여중개”란 회사가 중개를 목적으로 대여자가 보유 중인 증권을 풀링하여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대여자”란 대여중개신청을 하고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차입자에게 증권을 대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차입자”란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대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한 자를 말합니다.
4. “풀링”이란 중개를 목적으로 대여 중개를 신청한 다수 대여자들의 증권을 차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여자의 증권을 회사 고유분으로 인도 또는 인수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5. “대여중개신청”이란 대여자가 대여중개거래를 목적으로 증권을 대여하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회사가 대여자의 대여중개신청에 응함으로써 대여중개약정이 체결됩니다.
6. “개방형거래” 란 대여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대여자와 차입자 중 어느 일방의 거래종료 통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대차거래로 이 약관에 의한 대차거래는 “개방형거래” 입니다.
7. “대여풀”이란 대여자가 대여중개신청을 한 계좌의 종목 중 대여가 가능한 대상증권의 총집합(Pool)을 말합니다.
8. “대여가능잔고”란 대여자가 대여중개신청을 한 계좌 내 증권 중 대여가 가능한 대상증권으로서 대여풀에 편입된 증권을 말합니다.

9. “대여잔고”란 대여중개신청계좌에서 대여중개가 실행된 증권을 말합니다.
10. “대여거래”란 대여자가 보유 중인 증권을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대여거래”와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는 “차입거래”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는 회사의 중개에 의하여 차입자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체결되는 대여자와 차입자 간에 대여계약에 따른 거래를 말합니다.
11. “대여거래기간” 이란 대여거래의 시작(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2. “상환신청”이란 대여자가 회사에 대여잔고의 상환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13. “대여상환일”이란 대여종목이 상환 처리되어 대여자의 계좌에 입고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14. “대여종목제한”이란 대여풀 내 대여가 가능한 특정 종목의 대여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해당 증권을 대여풀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조 (대여중개 대상증권)

① 대여중개 대상증권은 상장된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회사에서 매매 가능한 증권을 말합니다.

1. 상장주권
2.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권 (DR)

② 회사는 원활한 대여중개를 위해 대상증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회사의 MTS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대여중개 대상증권의 평가기준은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로 합니다. 다만 해외증권의 경우 해외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전 영업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4조 (대여중개신청 대상계좌의 범위)

① 대여중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여자는 회사에 위탁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설해야 합니다. 다만 대여자의 계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계좌
2.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고객의 계좌(신용불량정보는 기타부실자, 채무불이행자, 신용연체정보를 말합니다.)
3. 압류, 가압류, 가처분되어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계좌
4. 기타 사고계좌
5. 대여자가 이 약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 및 대차중개를 이용하는 다른 대여자 또는 차입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객관적으로 손해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회사가 전항에 따라 대여자의 대여중개신청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대여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대여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5조 (대여중개신청 등)

① 고객은 회사의 MTS를 통하여 이 약관에 동의한 후 대여중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대여중개신청은 계좌단위로 하며 대여중개 약정체결과 동시에 해당 계좌내 대여가능종목이 회사의 대여풀에 편입됩니다. 단, 제7조 제2항에 따라 대여자가 대여종목제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회사의 대여풀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③ 대여중개 약정체결이 완료되더라도 대여거래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것이 아니며 차입자의 차입신청 및 회사의 통지 등 제8조와 제9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대여거래계약이 체결됩니다.

제 6조 (대여중개신청의 효력)

① 대여자와 회사 간 체결된 대여중개 약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1. 대여중개 약정계좌 신청의 해지

2. 대여중개 약정 신청된 계좌의 폐쇄
3. 대여중개 약정 체결 이후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대여중개 약정 체결 이후 회사가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사정변경 등 대여중개 약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유에 따라 대여중개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 대여자에게 그 사실을 대여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유에 따라 대여자의 대여중개약정 신청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대여풀에 편입된 증권을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대여중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대여중개해지 및 대여종목제한)

① 대여자는 언제든지 대여중개약정 해지를 신청하여 대여가능잔고 및 대여잔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여자로부터 대여중개약정 해지 신청을 받은 당일 이미 대여거래가 실행된 대여잔고에 대해 즉시 상환절차를 진행하고, 대여잔고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 대여중개약정이 해지됩니다. 대여잔고의 상환은 경우에 따라 6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대여자는 대여종목제한 신청을 통해 일부 특정 종목의 대여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여종목제한 신청을 받은 당일 이미 대여거래가 실행된 대여잔고에 대해 즉시 상환절차를 진행하고, 대여잔고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 대여종목 제한의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여잔고의 상환은 경우에 따라 6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대여중개약정 해지 및 대여종목제한 신청의 처리 완료 시 대여자에게 그 사실을 대여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8조 (대여거래 체결수량의 배정)

① 회사는 차입자의 차입신청이 있는 경우 종목별 대여풀의 규모, 대여가능수량 및 차입신청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거래 체결수량을 결정한 후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각 대여자에게 대여자별 대여거래 체결수량을 배정합니다.

1. 해당종목 보유수량이 많은 계좌
2. 대여중개 약정일이 빠른 계좌
3. 계좌개설일이 빠른 계좌

② 대여잔고에서 매도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1항의 배정방식에 따라 대여자에게 대여거래체결수량을 재 배정합니다.

③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체결수량의 배정을 매일 적용하며, 대여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최초 배정된 대여거래 체결 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대여거래의 체결 및 이행)

① 회사는 대여거래 체결수량 배정이 완료되면 차입자에게 대여가능잔고를 인도하고, 차입자에게 증권의 인도가 완료된 시점에 대여거래가 실행된 것으로 보며, 대여수수료는 인도완료 시점부터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체결되어 대여거래가 실행된 경우 해당 내역을 대여중개신청 시 대여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③ 대여계약체결일이 대여거래 시작일이며 회사가 대여자에게 대여잔고를 상환한 날이 대여거래 종료일이 됩니다.

④ 대여자는 MTS를 통해 대여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11조에 따라 차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차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대여거래 체결수량이 배정되었더라도, 차입자에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⑥ 외화증권의 경우 시차 및 현지 결제 기관의 지연 등 현지 사정에 따른 인도 및 상환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대여거래의 증권 인도)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여거래 체결수량을 차입자에게 인도하며 제8조에 따라 대여자에게 배정합니다.

제 11조 (담보징구)

① 회사는 대여거래를 실행하는 때에 회사와 차입자가 합의한 비율(이하 “담보비율”)의 담보를 차입자로부터 받습니다.

② 회사가 대여자로부터 회사의 계산으로 차입한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의 중개에 의하여 차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회사와 차입자간의 대차거래에 필요한 사항들은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와 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 12조 (회사의 상환책임 등)

①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회사는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여자에게 상환의무를 지고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대여종목과 같은 종류/같은 수량의 증권을 시장을 통하여 매입하여 제13조에서 정하는 수익 등과 함께 대여자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합니다.

② 유동성 부족 및 거래불가 등 회사와 차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미국 주식의 경우 LPS 종목(Low Priced Securities), OTC 종목 분류의 경우도 포함됩니다.)로 대여잔고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대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회사는 현금으로 대여잔고의 상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이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아 차입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매입한 증권, 대여수수료 및 수익 등을 회사에게 인도 또는 지급하고, 회사는 이를 대여자에게 인도 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대여수수료 계산 및 지급)

① 회사는 대여거래기간 동안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종목별 일일 대여수수료를 매일 산정한 후 누적합산하여 월단위로 정산합니다.

- 국내주식 = [대여종목 평가금액 X 일별 대여수수료율] /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 미국주식 = [대여종목 평가금액 X 일별 대여수수료율] / 360일
- 대여종목 평가금액 : 대여잔고 X 전일종가
- 전일종가 : 평가기준일에 해당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종가(다만 국내 공휴일인 경우 본 호에서 정하는 외화증권의 전일종가는 해당 외화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종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여수수료율 : 대여거래 체결 시 회사가 대여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수수료율

② 월단위 합산한 대여수수료는 익월 16일에 현금(외화의 경우 달러)으로 지급하며 해당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대여자의 상환요청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대여거래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동일한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대여수수료 지급일에 다음 산식으로 산정하여 과세기간(1.1~12.31)내 계좌기준 누적과세표준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 과세표준 = 대여수수료 지급액 X 지급일 기준환율
2. 기타소득세 = 과세표준 X 기타소득세율

④ 전항에 따른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시 고객 계좌의 원화 예수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위하여 해당 금액을 일시적으로 대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타대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대여금은 향후 고객 계좌에 원화 예수금이 입금되는 경우 동 예수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 처리됩니다.

⑤ 대여자는 회사의 대여수수료율 범위 등 대여수수료 산정관련 정보를 회사의 MTS,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대여잔고 권리처리)

① 회사는 대여잔고에서 발생하는 배당, 증자 등의 권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제공합니다. 외화증권의 경우 시차, 결제 지연 등 현지 사정에 따라 상장일과 실제 지급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조의 "상장일"은 "지급일"로 봅니다.

1. 현금배당 및 단주대금 :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배당금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후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2.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 : 신주의 상장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3. 유상증자: 대여자가 청약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약대금을 납입 받고, 상장일에 대여자에게 주식을 지급합니다. 대여자가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 권리가 소멸됩니다.
4. 감자, 병합, 합병 등 : 주식의 상장일에 대여잔고 수량을 일괄 정정합니다.
5. 분할: 신설 종목이 상장되지 않은 종목일 경우 기준일까지 대여자에게 대여잔고를 반환합니다. 다만 분할 전 회사가 거래정지 상태에서 비상장종목으로 분할하는 경우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현금으로 대여잔고의 상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 : 유상증자가 발생하여 대여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증서상 상장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인도합니다.

② 공개매수 및 매수청구는 대여중인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대여자가 보전 받아야 할 대여잔고에 대한 권리에 의결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권리행사는 대여종목이 차입자로부터 대여자에게 상환이 완료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⑤ 대여잔고 중 주식의 옵션배당 및 기타옵션 권리행사가 발생한 경우 기본지급방식에 의해 결정되어 본인의 선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대여잔고에 기초하여 권리가 발생하고 회사 또는 차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당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대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해당 권리를 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 대체 지급일은 예탁원의 실제 지급시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⑦ 현지 시장의 천재지변이나 공휴일,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 등으로 권리 처리일자의 시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 15조 (대여잔고의 상환)

① 대여자는 언제든지 대여잔고에 대해 회사에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대여자의 상환신청: 대여자의 대여잔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상환신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해당 대여잔고를 상환처리 합니다.
2. 대여잔고에 대한 매도체결: 대여자의 대여잔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매도주문이 체결된 경우 회사는 해당 대여잔고를 상환처리 합니다.
3. 대여종목제한 신청: 대여자가 대여종목제한을 통해 대여잔고 내 특정 종목의 대여를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종목의 대여잔고를 상환처리 합니다.

② 회사는 대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잔고에 대하여 상환을 진행하는 경우 신청일 포함 6영업일 이내에 대여상환 처리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자의 신청 없이 회사의 결정으로 대여자에게 대여잔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및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대여자의 대여중개를 중단하는 경우
2. 차입자가 대여 잔고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3. 차입자가 차입 거래를 철회한 경우
4. 차입자의 부도 위험 기타 시장 상황 변경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회사가 대여 잔고의 대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16조 (대여거래의 종료)

① 회사가 대여자에게 대여잔고를 상환한 시점을 대여거래의 종료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차입자로부터 대여잔고를 상환 받은 후 대여종목과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증권을 대여자에게 인도하고 제13조, 제14조의 대여수수료 및 권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해당 조항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대여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대상증권의 분할, 상장폐지 등 회사와 차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가 대여종목과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증권을 대여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대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대체증권 또는 현금 등을 대여자에게 지급하여 대여증권의 반환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단, 현지 상황에 따라 대체증권 또는 현금 등의 지급시점과 대여거래 종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대여중개의 정지)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산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여중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라 대여중개업무를 정지한 후 그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개 후 이 사실을 대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8조 (상속처리)

대여거래기간 중 대여자 사망으로 인해 대차중개계좌에 대한 상속업무가 진행될 경우 회사는 대여자의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대여잔고를 상환 처리하며 피상속인 계좌로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수수료 및 권리 등을 반환합니다.

제 19조 (대여자의 변경사항 신고)

대여자는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통지한 고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 MTS를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조 (약관등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대여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대여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통지를 할 경우 "대여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④ 대여자가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갖추거나 게시하여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대여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21조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2조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합니다.

제 23조 (분쟁조정)

대여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부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4조 (관할법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5조 (기타)

① 회사는 대여거래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사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최장 60일) 이내에 최종 정산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대여자에게 통지합니다.

1. 미 확정 또는 미 인지된 제세금, 수수료, 배당, 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 변동
2. 계산상의 오류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대여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03월16일부로 시행한다.